

의안번호	2204385
의 퇴 인	김용태 의원
회 답 일	2024.10.29.
추계번호	24C4099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(가산)금 총한도’를 ‘미납된 대출원리금’의 9%에서 5%로 하향 조정할 경우의 한국장학재단채 추가발행에 따른 이자 증가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,300만원(연평균 900만원)으로 추계됨
- 이는 연체(가산)금 감소분만큼 한국장학재단채 발행액이 증가할 경우의 이자 지원 증가액이며, 이때의 연체(가산)금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4.3억원¹⁾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연체금(안 제30조)	16	5	6	12	4	43	9

- 주: 1) 연체금 총한도 비율을 하향 조정에 따라 감소되는 연체(가산)금만큼 한국장학재단채 발행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 뒤 이때의 이자 비용 지원 증가액을 추계함
 2) 대출을 받은 연도의 ‘공급총액’과 연체 의무상환액 발생연도의 ‘연체가 발생한 의무상환액’ 간의 비중 추이가 추계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, 대출 후 6년이 경과한 때 연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3) 연체(가산)금이 의무상환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실적치 비중 자료를 준용
 4) 한국장학재단채의 조달금리는 '25년 3.57%(교육부 예산안 신규분 금리), '26년 이후에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국고채 전망금리에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신규분 금리(안)과 재단채 신규분 금리(안)의 차이를 가산한 뒤 평잔화계수를 적용하여 도출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연체금(안 제30조)	(제2항)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(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.	의무규정

1) 2025년 7.5억원, 2026년 2.7억원, 2027년 3.8억원, 2028년 7.4억원, 2029년 2.8억원으로 5년간 총 24.3억원으로 추계됨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연체금(안 제30조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본 추계에서는 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²⁾ 연체금 총한도’를 ‘미납된 대출원리금’의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- 연체금 총한도 비율을 하향 조정에 따라 감소되는 연체(가산)금만큼 한국장학재단채 발행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 뒤 이때의 이자 비용 지원 증가액을 추가재정소요로 추계함
- 추계기간 동안의 ‘연체 의무상환액’을 추정 한 뒤 개정안 시행에 따른 연체(가산)금 감소액을 추정하고, 이에 신규 한국장학재단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
 - － 추계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연도의 ‘ICL공급액’과 연체 의무상환액 발생연도의 ‘연체가 발생한 의무상환액’ 간의 비중 추이가 추계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, 대출 후 6년³⁾이 경과한 때 연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－ 연체(가산)금이 의무상환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실적치 비중 자료를 준용
 - － 한국장학재단채의 조달금리는 ‘25년은 교육부 예산(안)의 신규분 금리(안)인 3.57%로 하고, ‘26년 이후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국고채 전망금리에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신규분 금리(안)과 재단채 신규분 금리(안)의 차이 및 평잔화계수를 적용하여 도출

2)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(원)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제도로,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 지원과 지급보증을 실시

3) 이는 한국장학재단의 장기미상환자 기준 중 졸업 기준이 ‘학부졸업 후 3년’(자료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)인 점과 대출자가 취업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8.2개월인 점(‘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’(통계청) 참조) 등을 고려하였음

-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임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연체 의무상환액) 연체금 총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하여 추계기간동안 예상되는 연체 의무상환액을 도출
 - 대출을 받은 연도의 '공급총액'과 연체 의무상환액 발생연도의 '연체 발생 의무상환액' 간의 비중 추이가 추계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연체 발생 의무상환액을 추정

[표 2] 연도별 ICL 공급액: 2013~2023년

(단위: 억원)

연도	2013	2014	2015	2016	2017
ICL 공급액	17,811	16,386	13,705	11,983	9,046
연도	2019	2020	2021	2022	2023
ICL 공급액	8,777	8,215	7,953	8,264	7,918

자료: e-나라지표

[표 3] 연체 발생한 의무상환액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연체의무상환액	455	538	622	736	859

자료: 교육부

-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ICL을 받은 6년후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, '연도별 공급총액' 대비 '연체발생 의무상환액' 증가비율(%p) 평균은 1.7%p⁴⁾이며, 이를 추계기간 동안 발생할 '연도별 대출총액 대비 연체 의무상환액 비율'의 증가%p로 가정할 경우 향후 5년간 연체의무상환액 추정치는 아래와 같음

4) 2013년 ICL공급총액 17,811억원 대비 2019년에 발생한 연체 의무상환액 45,455백만원 비율은 2.6%이며, 2014년 ICL공급총액 대비 2020년에 발생한 연체 의무상환액 비중은 3.3%임. 이에 2020년의 비율 상승폭은 0.7%p이며, 이와 동일하게 상승%p를 계산할 경우 연도별로 2021년 1.3%p, 2022년 1.6%p, 2023년 3.4%p이며, 이의 평균은 1.7%p였음

[표 4] 연체 발생 의무상환액(추정)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
연체의무상환액(추정)	1,138	1,208	1,307	1,502	1,576

주: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체된 의무상환액이 대출 실행연도로 가정된 6년전의 '연도별 ICL 공급 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'의 연도별 증가율(%p)의 평균값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연체금과 연체가산금) '추정된 연체 의무상환액'에 실적치를 바탕으로 한 '현행 제도에서와 개정안 시행 후의 연체(가산)금 추정치'를 적용하여 각각 경우에서의 연체(가산)금을 도출한 뒤 이의 차이를 계산함

○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(총 한도 9%)하에서 최근 5년간 연체(가산)금 대비 의무상환액 비율은 연도별로 8.0%에서 8.5%였으며, 이를 개정안(총 한도 5%) 시행 시로 환산할 경우 4.3%에서 4.6%였음

- (기준선) 현행 제도하에서의 연체(가산)금 대비 의무상환액 비율을 최근 5년의 평균인 8.36%로 보고 이를 연체 의무상환액(추정)에 적용하여 향후 5년간의 연체(가산)금을 도출
- (개정안에 따른 전망) 개정안 시행 후의 연체(가산)금 대비 의무상환액 비율을 최근 5년간의 실적치를 개정안 시행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산한 경우의 평균인 4.54%로 보고, 이를 연체 의무상환액(추정)에 적용하여 연체(가산)금을 도출

[표 5] 현행 제도하에서의 연체(가산)금과 개정안 시행후로 환산할 경우의 연체(가산)금: 2019~2023년

(단위: 백만원, %)

	현행제도(9%)	개정안 적용(5%)환산
2019년	3,620 (8.0%)	1,974 (4.3%)
2020년	4,569 (8.5%)	2,492 (4.6%)
2021년	5,288 (8.5%)	2,871 (4.6%)
2022년	6,212 (8.5%)	3,379 (4.6%)
2023년	7,163 (8.3%)	3,911 (4.6%)

주: 1) ()안 숫자는 연도별 의무상환액 대비 연체(가산)금 비중임

2) '개정안 적용(5%)환산'은 2019~2023년의 실적치를 개정안 시행시로 환산했을 때의 값임
자료: 국세청

[표 6] 개정안 시행에 따른 연체(가산)금 감소 신규분 추정 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
현행 제도(9%)	1,647	583	832	1,626	623
개정안 시행후(5%)	895	317	452	883	338
감소액	753	266	380	743	285

주: 국세청에서 제출한 '2019~2023년 연도별 현행 제도와 실적치와 이를 개정안 시행 후로 환산했을 경우 연체(가산)금 비율' 각각의 평균값을 추정된 연체 의무상환액에 적용한 결과값임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추가재정소요: 한국장학재단채 신규발행분 증가에 따른 이자)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연체(가산)금이 감소되고 해당 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채의 신규발행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하고, 이에 대한 국고지원액인 이자를 추가재정소요로 계산

-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채 신규발행분의 이자율은 '25년은 교육부 예산(안)의 신규분 금리(안)인 3.57%로 하고, '26년 이후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국고채 전망금리에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신규분 금리(안)⁵⁾과 재단채 신규분 금리(안)의 차이를 적용한 뒤 평잔액계수를 적용하여 도출
- 향후 5년간의 한국장학재단채 이자율에 연체(가산)금을 적용하여 도출한 이자액 증가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,300만원으로 추정됨

[표 7] (추가재정소요)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채 신규발행 이자 증가분 추정 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
이자 증가분	16	5	6	12	4

주: 1) 개정에 따라 감소된 연체(가산)금 만큼 한국장학재단채의 신규발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2) '25년은 교육부 예산(안)의 신규분 금리(안) 3.57%로 하고, '26년 이후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국고채 전망금리에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신규분 금리(안)과 재단채 신규분 금리(안)의 차이와 평잔액 계수(58.3%)를 적용하여 도출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5) '25년 기획재정부 사업설명자료의 국고채 신규발행금액 이자율 3.4%를 준용하여 2026년 이후의 국고채와 한국장학재단채의 이자율 차이를 0.17%p로 가정함

IV. 부대의견

- 최근 5년간의 연체(가산)금 실적치를 바탕으로 계산하였고, 연체된 의무상환금은 대출 연도로부터 6년이 경과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, 실제 개정안 시행 후 연체율, 한국장학재단채 신규발행분 이자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